시 행	안전관리과-3941	(2014.9.18.)	
접 수	토목부-17985	(2014.9.18.)	
보존기간	년				
결재일자	2014.9.18.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
수 신 자	토목부장				

주무관	주무관	안전관리과장	
박찬표	홍민철	09/18 박상태	
협 조			

건설공사장 기동불시점검 결과보고 [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연결로 개선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14. 9. 17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안전관리과 홍민철, 박찬표

- 가설통로 안전에 관한 사항 (검토사항)
- P1 기초부 토류판 설치작업중인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작업통로 설치바람.(H≒3m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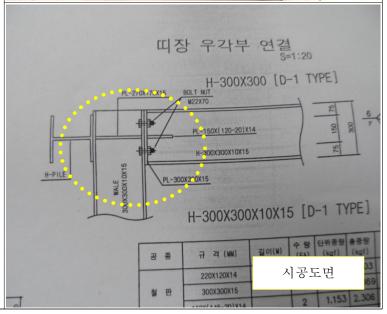


○ 흙막이붕괴재해 예방 사항 (검토사항)

 P1 흙막이가시설에 설치된 띠장의 우각부가 시공도면과 상이하게 설치 되었으니 시공도면과 같이 보완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방지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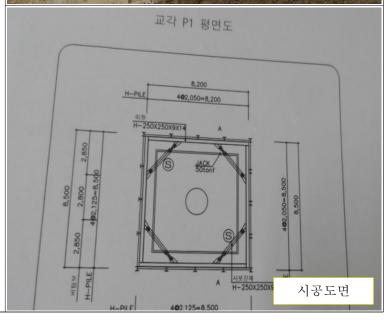


○ 흙막이붕괴재해 예방 사항 (검토사항)

- P1 기초부 흙막이가시설은 사보강 버팀재를 조속히 설치바라며,
- 기시설 강재는 전용 천공기로 천공하여 강재가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(흙막이지보공의 재료)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방지)







○ 감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(현장시정사항)

- 현장내 가설전기는 휀스에 본체를 걸쳐놓은 릴선(L≒60m)을 2개 연 결하여 사용중으로,
-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전기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전함 설치 등 보완바람.
 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2 (가설전기)
- 휀스에 걸쳐진 릴선 본체 낙하시 피복손상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되니 보완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

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에 관한 사항 (현장시정사항)

- 토류판 인양시 사용하는 백호의 축해지장치의 설치가 미흡하니, 중량물 인양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 후 작업바람.
 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- 추락재해 예방등에 관한 사항 (검토사항)
- P1 흙막이 가시설의 단부는 근로자 추락 또는 자재의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및 폭목 등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바람.
 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□ 조치사항: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 • 후 사진을 첨부하여 부서장 보고 후 2014.9.24(수)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